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 편의 및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개정(안 제47조제2항제1호나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부검소견서(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과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.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다. (생략) 2. (생략)	<u>인한 결과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.)</u> 다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